

발달장애인 신탁의 이해와 활용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변호사 전창훈



홍길동, 만 20세
 발달장애인



?



후견인



- 장애인 직금
- 장애인연금
- 보험금
-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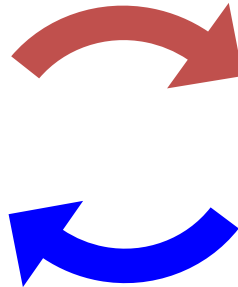
성년후견제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
해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
들에게 후견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그 부족한
능력을 보충해주는 제도

헌신적인 부모라면 할 수 있는 일

각종의 물품과 서비스 제공

- ▶ 장애인에게 평온한 주거, 적절한 먹거리, 의복, 의료서비스, 여가, 교육 및 사교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



헌신적인 부모라도 할 수 없는 일

성인 장애자녀가 해야 할 의사 결정을 대신하는 것

- ▶ “성인 장애 자녀 명의의”
 - 통장 개설 등 금융 업무
 - 주거 공간 마련 계약
 - 물품, 서비스 구입 계약
 - 의료 동의, 소송 제기 등

후견의 종류

제 도	근거	행위능력	대리권의 범위	종료
성년후견	법률	원칙적으로 없음	포괄적 대리권	• 후견원인의 소멸 • 피후견인의 사망
한정후견		후견인의 동의권 범위에서 제한	법원이 수여한 범위에서 대리권이 존재	상동
특정후견		있음	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대리권을 부여	• 후견기간의 만료 • 피후견인의 사망
임의후견	계약	있음	계약에서 정함	• 법원의 종료허가 • 해임 • 피후견인의 사망

사례 1



발달장애인 부모, 만 65세

- 지적장애 3급 자녀
- 자녀 명의의 금융자산 5000만원
- 삼촌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

✓ 횡령, 배임 위험

✓ 피해구제 곤란

✓수급권자 지위 유지 어려움

홈 > 인권

발달장애인을 '쌘짓돈'처럼 이용한 후견인

포항 피후견인 착취로 보는 후견제도의 허점

조은지 기자 | simhyea@naver.com



서울경제 > 정치·사회



[성년후견제도 시행해보니...] "후견인 횡령 무방비... 별도 감독기관 세워야"

조사관 1명이 수백명 후견인 전담... 범죄 예방·적발 사실상 힘들어
 후견인 동의없이도 정신병원 입원... 은행 등선 제도 몰라 서비스 제한
 독거치매노인은 제대로 이용 못해... 제도 보완·표준매뉴얼 보급 절실

서민준기자mor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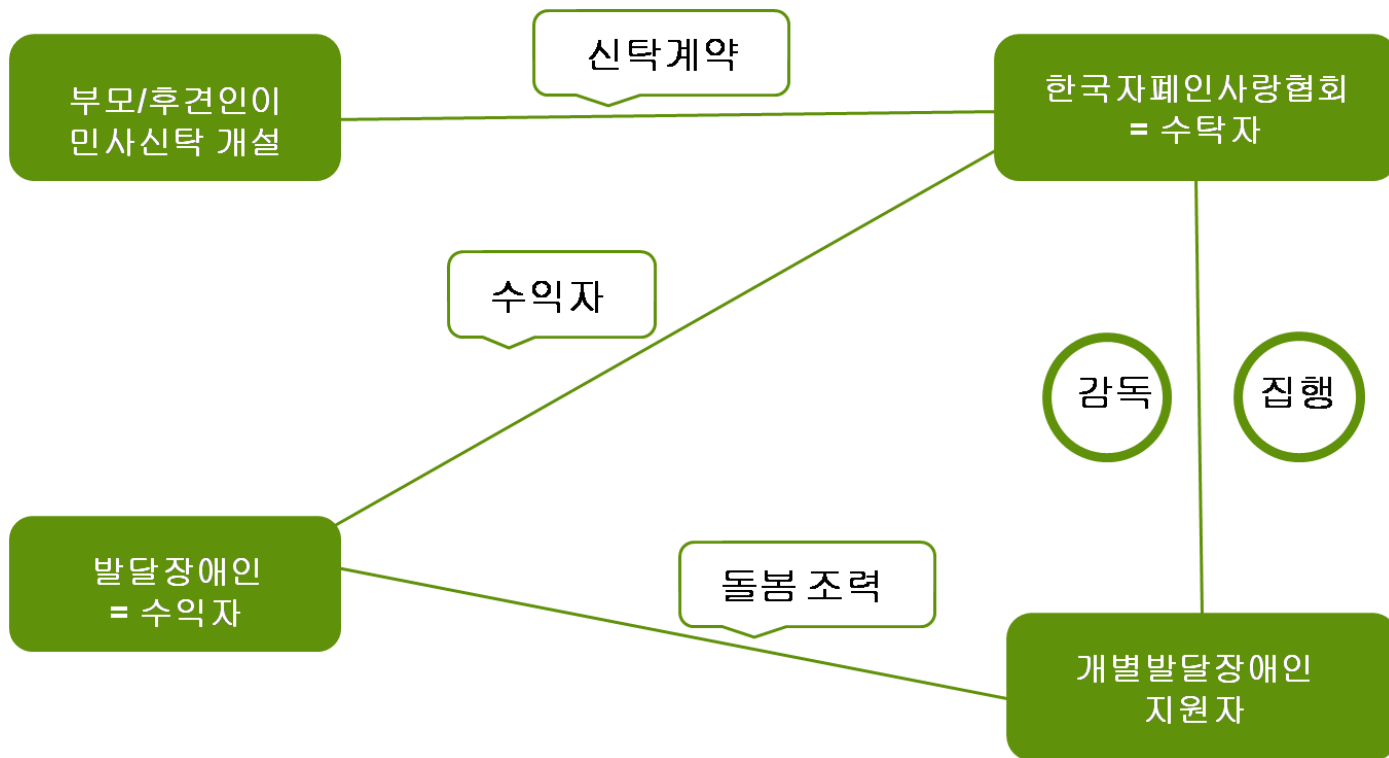
보도자료성
 명.논평

**[성명]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성년후견제도 시행
 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DPI 성명서

데스크승인 2013.06.27 16:51:43

웹페어뉴스 기자 | openwelcom@naver.com

발달장애인 신탁의 체계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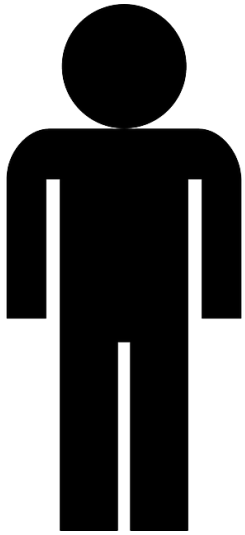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김달수, 만45세

-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판단능력 저하
- 식사, 의복착용 등 간단한 일상생활에 대하여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
- 보험회사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음

- ✓ 특정후견인 선임
: 소송절차 지원, 변호사 선임계약
- ✓ 신탁계약 체결

사례 3



발달장애인 이철수

- 간단한 노동, 일상생활상의 사무 처리 가능
- 금전에 대한 개념이 미약
- 상속받은 부동산/금융자산이 있음
- 이웃주민 C씨
 - : 부동산 증여계약 체결
 - : 수금비 통장관리, 왕령

1. 특정우견인 선임, 피해구제
2. 개인별 중장기계획 수립
3. 신탁계약
 - : 체결시 법원 동의

신탁설계

3. 신탁 관련: 사건본인의 육구 및 비용조달 계획

항목		희망사항	비용지출/ 관리업무(수탁자등)
주거	주거형태	사건본인 명의의 분양 예정인 아파트 2채를 이용하여, 한 채는 그룹홈으로 이용하고, 한 채는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함.	급여받은 사건본인 명의의 건물 이 재건축으로 분양이 되면 비용으로 이용, 5년 안에 입주 예정.
	주거 환경절비	사회복지사, 도우미 활용	
	주거 안전점검	거주 혹은 주기적 방문 등	
근로	근로 형태		
	근로 직종	사무직업	현재 복지관 성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업 체험 중임
	근로 시간	4~5시간	
가족	혼인	계획없음	
	자녀양육	계획없음	
일상생활	일상생활	신변처리, 음식, 청소 등 혼연으로 가능 해어샵이용	현재 월동 일주일 28,000원 * 4회 = 112,000원 해어샵 월 6만원
	의복	현재 동생과 함께 사고 있음.	
	교통수단	대중교통 이용	월 3만원
	통신	핸드폰 가입 후 사용 중임.	
	레크레이션활동	복지관에서 영화보기, 공연, 클래식 감상, 피아노 공연 하기.	복지관 이용료로 충당.
문화생활	여행	외국여행 좋아함.	매달 10만원 신탁 가능.
	모임	복서원기, 시사상식 모임 좋아함.	
	취미생활	현재 피아노 레슨 중, 잘터구경가기.	일주일 1회, 한달 32만원 비용
	스포츠	볼링과 배구 좋아함, 수영은 어려움, 헬스 이용하고 있음.	헬스 월 3만원.
		등산이나 조깅 등 스포츠 활동을 좋아함.	매달 10만원 신탁 가능.
	자기효호훈련	부모님과 대화와 교육.	
의료	뇌전증, 간박, 혈압 등 정기검진 필요. 일 년에 3회. 치과 검진은 일 년에 2회 필요함. 아이나래정신과의원과 세브란스 병원	월 5만원.	

신탁계약서

[별지 3] 신탁재산배분금 교부지침

제1조 (신탁재산배분금 교부의 시점)

- ① 신탁재산배분금 지급 개시의 시점은 _____년 _____월부터로 한다.
- ② 제1항의 신탁재산배분금 정기교부금 일시는 각 항목별로 정하되, 정함이 없으면 매 월 _____일로 한다.

제2조 (신탁재산배분금의 사용처)

- ① 신탁재산배분금의 액수는 연간 _____원을 상한으로 정한다. 다만, 그 배분금의 세부 항목은 수탁자의 필요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다.
- ② 신탁재산배분금의 지급이 개시되는 첫 해는 다음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다.

용도 항목	필요여부	예정 금액
• 일상생활비(의류, 식사 등 용돈)	O	- 월 5만 원
•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O	- 월 18만 원
• 장애인활동보조인 비용	O	- 월 9.9만 원
• 한국장애인사랑협회 회비	O	- 월 1만 원
• 여행 등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O	- 매월 5만 원 적립 후 적정 프로그램 이용시 실비로 사용
• 기타/주의사항	위탁자와 수탁자가 다를 경우 증여제에 유의하여 수익금을 교부할 것	

* 유의사항: 위탁자와 수탁자가 다를 경우 증여제에 유의하여 신탁재산배분금을 교부함

제3조 (신탁재산배분금 지급액)

신탁재산배분금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다.

항목	금액	지급방법
• 정기 교부금	1) 일상생활비	- 수탁자가 자동이체 지급 1) 송금계좌(매월 _____일)

발달장애인 신탁의 유형

부모가 관리하는 신탁

여행, 레크레이션, 자기옹호프로그램 참가 등 특정목적
으로 발달장애인 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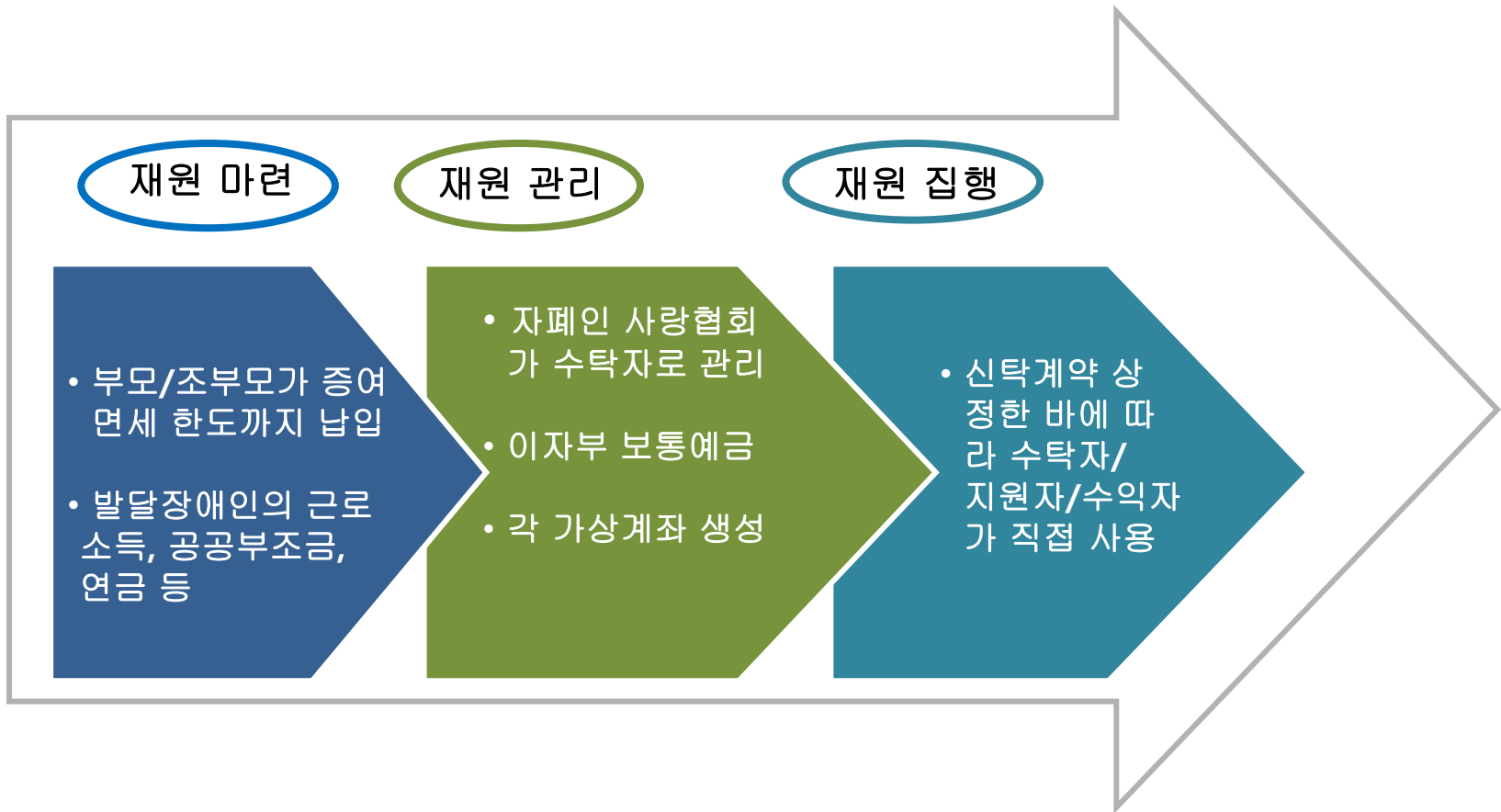
돌볼 가족이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 재산 갈취의 위험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
- 발달장애인의 재산이나 수급비, 장애인연금 등의 수입
을 발달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사용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
을 위한 신탁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수요에 맞춘 서비스 제공

신탁재산 누가, 어떻게 관리하나요?



신탁재산을 위한 안전장치

내부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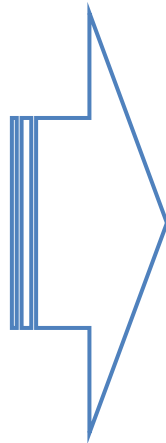
사랑협회 내 신탁관리위원회

계약상 감독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감독

외부 감독

사랑협회의 주무관청(보건복지부) 감사 등



수탁자
(협회)

감독

지원자

발달장애인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문 열어

자폐인사랑협회, 30일 개소식...성공적 자립생활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1-30 11:44:25



▲30일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개최한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개소식. 이날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한국성년후견학회가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과 한국성년후견학회 제철웅 교수가 환하게 웃고 있다.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돕는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3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회 이석현 부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인쇄하기](#) [닫기](#)

발달장애인 재산 '신탁'으로 관리...위원회 출범

기사입력 2016/01/14 18:34 송고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신탁 제도 관리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범했다.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발달장애인 신탁' 운영을 위한 '신탁관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산사회복지재단 후원으로 발달장애인 신탁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재산이 갈취 대상이 되는 일을 막고 적절히 사용되도록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방식이다. 발달장애인이나 부모의 재산을 수탁자인 협회에 맡기면 발달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

이날 발족한 위원회는 신탁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감독·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종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이해영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진영 상일회계법인 부대표,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균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발달장애인 부모대표 노석원 씨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songa@yna.co.kr

장기적 전망 - 특별수요신탁

특별수요신탁으로 발전

- 장애인의 특별수요 실현 목적
- 장애인 생전에는 위 목적으로만 사용, 사후 사적 재산으로 회복
- 기초생활수급자 결정시, 재산에서 제외
단, 사후 잔여 재산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기지급 기초수급비의 일정비율을 공제

최저생활이 아닌,
인간다운 삶의
보장

공공후견사업과의 연계

-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역할
 - 후견법인
 - 민사신탁법인
 - 발달장애인의 후견, 신탁 양면 지원
- 저소득층의 이용 비용 지원